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2. 1. .
제 출 자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의료법제37조,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 개정과 정부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선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지침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등에 부합되게 수정·보완 코자함

2. 주요골자

-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개정 등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등 항목과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 및 도의 심의사항인 도시가스요금 항목 삭제(제2조2항4호6호7호)
- 위원장(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부시장)을 물가담당국장으로하고 필요시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 할 수 있도록 개정(제3조2항)
- 공공요금 결정시 소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중 시민·소비자대표 구성비율이 25%이상 되도록 명시(제3조3항)
-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 위촉을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제3조3항,제7조3항)

3. 참고사항

-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 행정자치부 “일하는방식 개선지침, 재정경제부 ”공공요금결정과정에의 “소비자대표참여 활성화 방안“
- 경상북도 경교41610-11502(2000.12.15)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6호및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및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된다.

다만, 공공요금심의 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 의원, **시민·소비자단체대표(총위원의 25%이상구성)**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생략)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 이 된다.	제2조(기능)제①항(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제②항(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삭제 5.(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현행과 같음) 9.(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된다. <u>다만, 공공요금심의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및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u>시의회의원</u> 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회의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실무회의) ①~②(생략)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u>위원장</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및단체 의장과 교수, 언론인, <u>시의회의원</u>, <u>시민·소비자단체대표(총위원의25% 이상구성)</u>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u>시장</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회의) ①~②(현행과 같음)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국장이 되고 실무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u>시장</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